

## 지형·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

통보기관: 00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

일련 번호	변동 지물	변동 내용	용도 (종류)	명칭	규모 [면적(㎡) 또는 길이(km)]	위치 [건축물 주소(지번 또는 도로명), 도로 구간 등]	준공일자 (변경일자)	관리기관
1							.	
2							.	
3							.	

###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

**1. 작성방법**

- 가. 변동지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 신축, 이전, 해체 및 멸실된 건축물은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, 증축, 개축, 재축(再築), 대수선 및 리모델링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평면 모양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.
- 나. 변동지물이 도로인 경우에는 준공된 도로 및 노선이 고시된 도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 신설, 확장된 도로는 모두 변동지물에 포함하고, 개량된 도로는 해당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동지물에 포함합니다.
- 다. 변동지물이 명칭인 경우에는 용도·규모·관리기관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- 라. 관리기관이 기관, 법인 및 단체 등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"개인"이라고 기재합니다.

**2. 제출자료**

- 가. 건축물의 경우: 사용승인서 사본, 대지의 경계를 포함하는 평면도(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)
- 나. 도로의 경우: 공사의 개요나 노선의 고시 등 변경 근거자료 및 위치도(축척 1/5,000 이상 지형도)
- 다. 명칭의 경우: 근거 법령, 고시 자료 및 인가 서류 등 변경 근거자료
- 라.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도로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측량으로 작성한 측량성과[설계평면도 또는 준공도면(dwg 또는 dxf 등 전자도면)]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